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05

발의연월일: 2024. 9. 27.

발 의 자:김용만・이정문・조승래

이인영 · 염태영 · 이훈기

최민희 • 강준현 • 이강일

김용민 · 이기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소송법」 제6조는 대법원은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하고 있음. 「행정심판법」 제59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명령 등이위법・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이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단순히 관보에 게재만 하고 있고, 명령 등이 준사법적절차인 행정심판에서 위법・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실은 정부부처 내에서만 통지되고 있음.

이에 「행정소송법」 제6조에 해당하는 명령·규칙 및 「행정심판법」 제59조에 해당하는 명령 등을 현행 국회에 대한 행정입법 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함(안 제9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403호) 및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3절에 제9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3(위헌·위법 또는 불합리한 명령·규칙 등의 제출) ① 행정 안전부장관은 「행정소송법」 제6조에 해당하는 명령·규칙과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당 명령·규칙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 ② 법제처장은 「행정심판법」 제59조에 해당하는 명령 등과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당 명령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총 리령 및 부령은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검토하는 대 통령령등에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 설=""> 제98조의3(위헌・위법 또는 불합 리한 명령・규칙 등의 제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소 송법」 제6조에 해당하는 명령 ·규칙과 그 사실을 10일 이내 에 해당 명령・규칙을 소관하는 상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행정심판법」 제59조에 해당하는 명령 등과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당 명령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에 해당하는 대통 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제98 조의2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조의2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u>
조의2세3양에 따라 강임위원외 가 검토하는 대통령령등에 포